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2005. 11.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.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1월 7일 구청장
 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09일 회부
 - 다. 상정일자 : 2005년 11월 10일
- 제1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박정희)

가. 개정이유

- 2006. 1. 1부터 도입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 주민 연서인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.

나. 주요내용

-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당초 20세이상 500인으로 명시된 사항을 20세이상 200인 이상으로 개정(안 제2조).

다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(주민의 감사청구)
- 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-626(2005.9.5)호 및 서울시 민원담당관-757(2005.9.8)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통보와 관련임.

3.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(專門委員 김찬제)

-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500인 이상으로 하던 주민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,
- 본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2000년 6월 15일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으나, 최소 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가 많아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,
-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청구연서 주민의 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,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4. 審 査 結 果 : 原 案 可 決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8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1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2006. 1. 1부터 도입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 주민 연서인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.

2. 주요골자

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당초 20세이상 500인으로 명시된 사항을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 개정(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지방자치법 제13조의4(주민의 감사청구)

- 행정자치부 지방감사팀-626(2005.9.5)호 및 서울시 민원담당관-757(2005.9.8)호
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통보와 관련임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필요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5. 10. 4 ~ 2005. 10. 14(의견없음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중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 이상 "500인"을 20세 이상 "200인 이상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20세이상 500인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 연서 주민수는 20세이상 200인 이상으로 한다.</p>